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AI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 확충 가속화

- 신사업·신유형 민자 도입,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신규 발굴

- 임기근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사업·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을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BTL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으로 생활밀착형 시설을 확대
-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지역업체 참여 유인 제고, '민자 카라반' 가동 등을 통해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전력비 제도 개선 등 현장의 애로 해소 및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6.2.11일(수)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94년 민간투자(민자)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154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였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 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적이다. 금번 대책은 편중된 민자시설(도로·철도 등)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전통적 SOC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해 경제성장,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①신사업·신유형 확대** 먼저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新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新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하여 민자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사업모델 마련 등을 거쳐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또한, ‘단순 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를 확대한다.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주요내용**

<b>AI데이터센터</b>	▶ 부동산(시설)이 포함된 SW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26.2월), 사업모델 마련(‘26.1분기~), 타당성검토 용역(‘26년) 등을 거쳐 <b>1호 민자사업 추진</b> (‘27년~)
<b>전력망</b> (예: 에너지고속도로)	▶ <b>전력망특별법 개정</b> (‘26년~), 후속 행정조치(민자제도 설계 등), 국민성장 펀드 지원 등으로 <b>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b>
<b>철도복합시설</b> (예: 차량기지+물류센터 등)	▶ <b>사업후보지 발굴</b> (‘26년~), <b>물류 편익기준 마련</b> (‘26.下) 등을 통해 교통·물류·주거 등이 포함된 <b>‘철도 복합개발시설’ 1호 민자사업 추진</b> (‘27년~)
<b>운영형 민자</b> (예: 기존도로 2→4차선 증설운영)	▶ <b>①대상 확대</b> (기존 민자시설만 가능 → 재정시설도 허용), <b>②절차 구체화</b> , <b>③대규모 증설이 없는 ‘단순운영형 민자’ 신설</b> (‘26.上 민투법 개정안 발의) <b>④운영형 민자 추진시 관리이행계획 수립절차 면제</b> (‘26.2월)
<b>대상지 공모형</b>	▶ 공모사업자 선정 후 <b>주무관청의 요청</b> 으로 제안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b>비용은 보전</b> 하고, 민자사업 포털에서 <b>공고 내용 일괄 제공</b> (‘26.下)

**(㉔국민참여 확대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특히, 일반 국민은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 종합평가(AHP)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신규, 노후시설 개량)인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26년 1,000억원)’도 ’26년 1분기에 신설한다.

**㉔ ‘국민참여 확대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주요내용**

<p><b>‘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은 위험부담 없이(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등)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펀드 도입</li> <li>- RFP 표준안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추진근거·가점(1,000점 중 20점) 신설</li> <li>- 사업시행자가 국민참여 펀드에서 조달하는 자금은 선순위채로 인정하여 산기반 신보가 추가로 보증</li> <li>-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산기반신보가 우대보증(보증요율 최대 △0.1%p 인하)</li> </ul>
<p><b>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일몰 연장(1억원 한도 15.4% 분리과세, ’25년→’28년)</li> <li>▶ ‘만기 없는 인프라펀드’ 신설, 차입한도 확대(자본금의 30 →100%), 사회기반시설 외 자산운용을 10% 범위 내에서 허용(민투법 개정 完)</li> </ul>
<p><b>자금재조달 이익공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공유 면제 외에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정상화 이후 주무관청과 유예된 이익을 공유하도록 개선(☞ 주무관청의 공유이익은 사용료 인하에 활용)</li> </ul>
<p><b>생활형 SOC</b> (예: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시 정책성 비중 상향(+5%p),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 확대(유치원·학교 등 7종 → 돌봄시설 등 3종 추가)</li> </ul>
<p><b>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년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신설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신규, 노후시설 개량)인 BTL사업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26.1분기 펀드 출범)</li> </ul>

**㉔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 추진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한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하고, RFP 평가시 안전배점 상향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㉔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주요내용**

<p><b>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신설</b></p>	<p>▶(우대가점)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추가 우대가점 신설(100점 중 1점*)</p> <p>* 인구감소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은 100점 중 0.5점 우대</p> <p>▶(종합평가)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5%p)</p>
<p><b>지역업체 인센티브 신설</b></p>	<p>▶(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공공계약제도상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국가 88억원, 지방정부 15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만 참여 가능)’를 민자에도 도입</p> <p>▶(지역업체 우대가점) 민자 SPC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사업자 선정시 1,000점 기준)을 허용(26.2분기)</p>
<p><b>지방정부 지원 등 강화</b></p>	<p>▶(민자 카라반) 지역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자 카라반」을 가동하여 지방정부 현장에서 사업발굴, 컨설팅,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추진(26.上)</p> <p>▶(민투심) 공식적 채널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26.下,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민투심 민간위원 1명을 추천)</p>
<p><b>안전시설</b> (예: 하수관로+제방)</p>	<p>▶(안전분야 번들링 민자) 민자 추진이 어려운 안전시설(소규모로 인해 금융약정 등 곤란)에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 사업모델 마련 등으로 1호 민자사업 추진(26.下)</p>
<p><b>민자사업의 안전 강화</b></p>	<p>▶(사업자 선정) RFP 평가시 안전 배점상향(1,000점 만점 중 10→50점)·감점 신설(20점)</p> <p>▶(중대재해 사업자 배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민자사업 참여 제한 (민투법 개정)</p>

**④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전력비 개선 등으로 착공지연을 해소하며, 정보 공개 강화·정보제공 확대로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최대 △5개월) 등을 통해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한다. 또한, 실시협약 정보 공개 기준 마련·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 ④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 주요내용

<p><b>절차 부담 완화</b></p>	<p>▶민자사업의 행정절차(적격성조사·민투심)를 조속히 추진하여 추진기간을 단축(적격성조사 최대 △1개월*, 민투심 최대 △4개월**)</p> <p>* 예) 철도사업 '(기존) 최대 1년 6개월 → (개선) 최대 1년 5개월'</p> <p>** 민투심 개최 주기: '(기존) 분기별 1회 → (개선) 수시 개최'</p>
<p><b>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b></p>	<p>▶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하여 '공사비 변동 리스크 완화'</p> <p>* (기존) 건설기간 중 'GDP 디플레이터와 CPI 적용 공사비 차이'가 7% 이상 발생시 주무관청 분담비율(50%)을 총사업비에 반영 → (개선) 공사비 조정 기준을 완화(7 → 5% 이상)하고 주무관청 분담비율을 상향(50 → 60%)</p>
<p><b>전력비 정산방식 신설</b></p>	<p>▶(신규사업) "전력단가 상승률 &gt; CPI 상승률" 구간에 대해 초과분의 최대 80%를 주무관청이 부담(구체적 분담비율은 실시협약에서 규정)</p> <p>▶(기존사업) 개별사업별로 협상 후 실시협약 변경으로 추진</p>
<p><b>BTO 자기자본비율 완화</b></p>	<p>▶건설기간 중 BTO 자기자본비율 하향(15→10%) 요건을 구체화*</p> <p>* (기존) 공공부문 출자, 보험 가입 등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인하 → (개선) 공공부문이 SPC의 자기자본 40% 이상을 출자 + 사업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 가입</p>
<p><b>정보공개 강화</b></p>	<p>▶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26.下)</p> <p>▶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현황 공개('26.下)</p>
<p><b>정보제공 확대</b></p>	<p>▶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26.2월~)</p> <p>▶민간투자 온라인 교육을 무료화·확대(관계자 → 전 국민)</p>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 분야·생활 SOC 등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기반 마련으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4-333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
			사무관	이창준 (lcj7596@korea.kr)
			사무관	김철홍 (chulhong@korea.kr)
			사무관	김승환 (shwan27@korea.kr)
			주무관	김유정 (kyuj@korea.kr)

